기후변화행동연구소
Institute for Climate Change Action

정　　관

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

기후변화행동연구소
Institute for Climate Change Action

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정관

2009년 6월 12일 제정
2010년 6월 17일 개정

제1장 총 칙

제 1조 (명칭) 본 법인은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라 칭한다. 영문 명칭은 'Institute for Climate Change Action (ICCA)'으로 한다.

제 2조 (목적) 본 법인은 정책연구, 조사활동, 교육 및 출판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사업)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연구 및 제반 조사활동
2. 기후변화 교육 및 강좌
3. 소식지, 연구보고서 및 교재 등의 출판 활동
4.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
5. 시민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제반 공익사업
6.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연구 기관·단체와의 교류
7. 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

제 4조 (소재지) 법인의 소재지는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(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시경길 36) 용비어천가 1324호에 두고,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·지회를 둔다.

제2장 회 원

제 5조 (회원) 본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활동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.

제 6조 (가입) 본 법인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가입을 신청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과 단체로 한다.

제 7조 (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본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제반 활동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며, 각종 회의에서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다.
②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
제 8조 (탈퇴 및 제명)
①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장기간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3장 임 원 및 기 구

제 9조 (임원)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이사장 1인
2. 소장 1인
3. 이사(이사장, 소장을 포함한다.) 30인 이내
4. 감사 2인

제 10조 (임원의 선임)

① 본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원 결원 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결원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 11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 12조 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제 13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14조 (임원의 직무)
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4.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④ 소장은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 15조 (기구)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1. 위원회
2. 사무국

제 16조 (위원회)
① 법인의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와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 연구위원회는 정책연구 및 조사사업, 각종 연구발표회와 토론회를 기획하고 주관한다.
③ 시민소통위원회는 기후변화 강좌, 교재의 출판, 온라인 정보제공, 제반 공익사업을 기획하고 주관한다.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선임한다.

제 17조 (사무국) 사무국은 상근연구원과 객원연구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 사무국 업무는 소장이 총괄한다.

제4장 총 회

제 18조 (총회의 구성과 소집)
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회원 1/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 19조 (총회의 기능)
1. 정관의 개정
2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안, 감사보고의 승인
3. 임원 선출(이사장, 이사, 감사, 소장)
4. 고문 추대
5.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 20조 (총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)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.

제 21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 회원은 자신의 인사 및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제5장 이 사 회

제 22조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
① 이사회는 이사장, 이사, 소장으로 구성한다.
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개최하며,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사의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.
③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23조 (이사회의 기능)
1.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의결
2. 위원회 위원장 선임
3. 회원의 제명
4. 기타 법인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

제 24조 (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장 재산과 회계

제 25조 (재산의 구분)
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.
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 26조 (재산의 관리)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7조 (재정)
① 본 법인의 경상재정은 회원 회비, 기부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② 회비의 액수는 매년 상반기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, 총회의 승인으로 결정한다.
③ 필요시 경상재정과 구분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기금은 재정에 포함된다.
④ 연간 회비와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 또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다.

제 28조 (회계연도)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29조 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30조 (임원의 보수) 상근 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보 칙

제 31조 (정관변경)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2조 (해산)
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.

제 32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

관한 규정과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(사업년도) 법인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 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한다.

제 3조(경과조치)
① 창립총회에서는 과도기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한다.
②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1년 2월 말까지로 한다.
③ 창립총회의 성원은 참석인원으로 한다.

제 3조(등기이사) 법인의 이사장과 소장을 포함한 이사 6인을 사단법인 등기 이사로 한다.

※ 기본재산 목록을 정관의 별지로 첨부